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시에* 

완도군 조례 제2970호

붙임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0호

#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 (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 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도군수 119100

완도군 조례 제2971호

붙임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1호

#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의장은 선거공보,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, 각종 게시 자료, 제17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용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·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,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·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에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연1회 제8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**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시에* 

완도군 조례 제2972호

붙임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2호

# 완도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 의 권리를 보호하고,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① "장기요양기관"이란 완도군에 소재하며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.
  - ② "요양보호사"란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완도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 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
  - 2.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
  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5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처우개선 사업)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  - 2.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, 조사, 연구 사업
  - 3.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
  - 4.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
  - 5.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)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「근로기준법」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·조치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·폭행·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)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 -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1191%

완도군 조례 제2973호

붙임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3호

#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기본법」의 개정에 따라 완도군 조례 중에 표기된 "만"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만 나이 일괄개정) 완도군 조례 중 일괄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.

[清計]

# [조례 일괄 정비대상]

全비명         五 항         自动等         17.8         包 : 만19세 이상 만64세 미만 가.         가 3           완도군 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제3조         인 사람         나. 어린이 : 만7세 이상 만12세 미만 나.         나. 그에 이상 만13세 미만 나.         나. 그에 이상 만18세 미만 다.         나. 그게 이상 만2세 미만 마.         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제9조         의 노인         보. 만6세 미란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 4. 6세 마마 마.         소. 단세 미만의 어린이 및 만65세 이상 4. 6세 마마 마.         스트 스타 마.	2	7		신·구조문	<b>근 대비</b>			
완도군 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1. 성 인 : 만19세 이상 만12세 미만 가	温	を過る	不够	स्रे	7	₹°		
왕도군 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원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기계3조 인 사람 다. 청소년 : 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 다 7세 이상 단단에 미만 한 고등 학생 기계 이상 만18세 미만 다 13세 이상 한 상 등 고등 학생 기계 이 한 고등 기계 이 한 상 에 대한 의 학생 등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 기계				: 만19세 이상 만64세 미단	1		ا ا ا ا	64세
왕도군 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왕도군 이후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왕도군 이후민속전시관 관리  역 사람  이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이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기계 이상 1 단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1 문세미만				인 사람		14.1		
왕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학생  4. 만6세미만의 어린이 및 단5세 이 상 1. 6세미만			? ?	나. 어린이 : <u>만7세 이상 만12세</u> 미만	7.	7세	ক ত	12세
왕도군 이촌민속전시관 관리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학생  4. 만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4. 6세미만			ASA 4.04 *	인 사람				
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생 4. 만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4. 6세미만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왕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상의 노인		와도규 어초미속저시과 과리	주기 <b>♥</b>	다. 청소년 : 만13세 이상 만18세 미만		13세	아	18세
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      제6조 상의 노인       4. 만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단65세 이 상 4. 6세 미만	-	및 우영에 관한 조례		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등			1	
환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        제6조         4. 만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4. 6세미만		  -  -		학세				
왕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제6조 상의 노인			至0分	어린이 및 65세 이상				1
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제6조 상의 노인					-			
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이 노인		와드구 해양생태정시과 과리		및 만65세 이	4. 6 <sup>A</sup>		65AI -	
	2	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6조	상의 노인				

2	ਜ የ		신·구조문	문 대비
라 타	수 조 <u>후</u>	소하	सेख	개정
c	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	₩ 7.7×	제4조(지원상한연령) 이 조례에 따른 비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영유아	제4조(지원상한연령)
)	보육료 지원 조례		의 연령은 만5세까지	5 <i>A</i> ]
			제2조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 및	제2조(지원대상)
			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	
			한다)의 지원 대상은 「국민건강보험	
	왕도규 차상위계층 노이가구		법」제6조제3항 및「노인장기요양보	
4	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	제2조	험법」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	
	관한 조례		도군 지역가입자중 만65세 이상 노인	65 <i>ਐ</i>
			으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월 보험료 부	
			과금액이 10,000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노	
			인가구로 한다.	

		石	以-7-4-是	平山出
海	<u> </u>		を登る	
			5 · 귀어자" 165세 이하	2
2	완도군 귀농ㆍ귀어자 지원 조례	제2조	경영을 녹석으로 가족이 완노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 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	
			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	
9	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	제 2주	5. "노인"이란 만65세 이상인 사람을	5 65세
	운영에 관한 조례	-	말한다.	15
			제12조(체험료의 감면) ① 체험료의	제12조(체험료의 감면) ①
1	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	제19조	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_	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	777 IV	캬.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	커. 19세
			가정의 각 세대원	

िर	于 7		신·구조문	문 대비
	소예정	소층	सुख	개정
∞	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정수에 관한 조례	제2조	3. 일 반 가. 성 인 :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인 사람 나. 청소년 :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 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·고 등학생 다. (생 략) 라. 어린이 :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 인 사람	3 가: 19세 이상 64세 나 13세 이상 18세 이하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(현행과 같음)
		제5조	<ul><li>4.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 어린이</li><li>11. 만 65세 이상 노인</li></ul>	4
6	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	표 32	4. 경로우대 대상: 만 65세 이상인 사람 5. 성인: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 6. 청소년: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 람 가 어린이: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 함 유야: 만 6세 이하인 사람 8. 유야: 만 6세 이하인 사람	4
				32

소비병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	2	7 F	中田	신 구조문 대비	
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      지3조       나 어린이 :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      나 19        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      사람       다 어린이 :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      나 7         자료       사람       다 이런이 :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      나 7         자료       사람       다 정소년 : 만 13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      다 7         자료      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・고등학생		수희정			
환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    제2조       1. "노인"이란 완도군 관내 만 65세 이상의 1	10	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	₩ 33	람료 적용대상 성 인: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7: 19 거린이: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나 7 정소년: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다 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	[세 이하
완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제2조 주민을 말한다			제9조	만 6세 미만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	(654)
	1		제2조	1. "노인"이란 완도군 관내 만 65세 이상의 1	65·4

2	<u>፣</u>		신·구조문	문 대비
	4点を	소하	तृ ले	개정
		제5조	②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 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(비급	(2) (53) -
2	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		여 제외) 30%를 감면한다.	
	구급차 운영 조례	日子	제2조(적용례) 제5조제2항의 만 65세 이상	제2조(적용례) 65세
		7 P	외래진료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19년 6월	
		<u>세</u> 2수	1일부터 적용한다.	
			② 제1항에 따른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	
			양성 지원 대상자는 완도군에 주민등록을	
(	완도군 산모·신생아	101	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60	18 <sup>A</sup>
13	건강관리사 지원 조례	₩ 10Å	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교육 이수 후 서비	
			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사람	
			으로 한다.	-

선·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	9.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인 경우	8.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 8. 18세	5. 만 6세 미만의 어린이
47 文 登 卷	제27조 제1항	제36조 제1항	표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
圣调명	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	완도군 수도급수 조례	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
影	14	15	16

4	7. 7.	中田	신 구조문 대비	문 대비
라 타	<b>小歯</b> る	不	सिख	개정
17	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	제12조	②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군수가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 로 한다.	© 194
18	완도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	표 전 전 1호	8. 만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	8. 19세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 완도군수*세계* 

완도군 조례 제2974호

붙임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4호

#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"를 "경우 이용료를 감면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면제하거나 감경"을 "감면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. 면제

- 가. 국가, 전라남도,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
- 나. 교육,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
## 2. 50퍼센트 감경

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
-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라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마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

당하는 사람

- 바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 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사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아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 조에 해당하는 사람
- 자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차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교육,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카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
- ③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.

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, 7,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시에* 

완도군 조례 제2975호

붙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5호

##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5항 중 "한다"를 "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·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완도군의회(이하 "군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

는 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공유재산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작성하며, 회계연 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림에 대 하여는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 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. 취득의 경우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 : 2천제곱미터

제47조의2(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)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

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.

제51조 각 호 부분 단서 중 1급관사를 삭제하며, 2급관사 "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"를 "부군수 관사 및 보건의료원장 관사 등 이에 준하는 관사"로 한다.

제52조 단서 중 "1급·2급"을 "2급"으로 한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하"를 "이하 이 장에서"로, "다음사항"을 "다음 각 호의 사항"으로 한다.

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유가 있는 때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예산"을 "예산의 범위 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응접세트, 커텐 등 기본 장식물"을 "기본적인 비품"으로, "경비(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다)"를 "경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시엣에* 

완도군 조례 제2976호

붙임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6호

##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"을 "(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관서당경비"를 "일상경비" 로 한다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 2(물품의 무상대부)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2조의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약계층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

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"영 제96조 제2항"을 "영 제78조제4항"으로, "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(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)"을 "감정평가법인 등의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감정평가업자가"를 "감정기관에서"로 한다.

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# 물품의 품종·상태 구분

#### O 물품의 분류

- (1) 비소모품: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.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.
- (2) 소모품: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소모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. 그 성질이 사용함 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그 밖의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.

#### O 품종구분 기준

- (1) 비소모품
  -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는 물품. 다만,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.
  - ②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.

#### (2) 소모품

-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, 유류 등.
- ②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 용기, 사무용 소모품, 공구 등.
- ③ 다른 물품을 수리·조립·제작(생산)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, 건축자재 등.
-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및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(여러 개의 부분품으로 조합 완성되는 것으로서 전체를 1개의 단일물품으로 관리가 곤란한 물품) 또는 진압장비, 의류, 핸드폰(휴대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어 관리되고 있는 물품) 등. (다만, 무기 또는 탄약류는 제외)

#### ○ 물품상태 분류 기준

- (1) 신품: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.
- (2) 중고품: 사용된 물품으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.
- (3) 수리 필요품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.(수리비가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)
- (4) 폐품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(수리비 지출이 경제적 한계를 초과하는 물품)과 그 밖의 수리할 수 없는 물품.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도군 조례 제2977호

붙임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7호

##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"를 "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"으로, "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"를 "경우를 말한다"로 한다. 제5조제1항 본문 중 "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"을 "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"으로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"를 "고시한범위 내"로 한다.

제7조제2항 전단 중 "정기발굴조사"를 "정기 발굴조사"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위원회는 「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완도군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도군수 시에게

완도군 조례 제2978호

붙임 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1부.

#### 완도군 조례 제2978호

## 완도군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완도군 수목유전자원의 보전·전시 및 자원화와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수목원"이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의 수목유전자원을 활용·조성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, 건강증진 등의 공간을 제공하는 법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.
- 2. "정원"이란 식물, 토석, 시설물(조형물을 포함한다)등을 전시·배치하거나 재배·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설과 그 토지로 법 제2조제1의2호의 공간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- 제4조(책무 등) ① 완도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수목원·정원의 지속적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한다.
  -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·정원 조성에 힘쓰며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모든 군민과 완도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사업장을 두고 수목원 · 정원을 조성 · 운영하는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사업자"라 한다)은 수목원 · 정원의 이용 및 조성 · 진홍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군의시책에 적극 참여 · 협력해야 한다.
- 제5조(사업추진 및 지원) ① 군수는 수목원·정원의 조성·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 조례에서 "조성·진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·정원식물의 수집·증식·보존· 복원 및 전시
  - 2. 품종개발 및 보급, 학술적 · 산업적 조사 및 연구
  - 3. 자연학습, 국·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
  - 4. 코디네이터,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·판매 등 경영 활성화
  - 5. 수목원ㆍ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
  - 6.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
  - 7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-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조성·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③ 조성·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군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, 수목원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수목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하고, 정원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원으로 등록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자로 한다.

제6조(수목원ㆍ정원 전문가 활용) ① 군수는 조성ㆍ진흥사업의 전문적

수립·추진을 위하여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수목원·정원 전문가를 선발·활용할 경우에는 선발된 수목원·정원 전문가에게 해당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증표의 서식,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- ② 군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증표를 발급한 수목원·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7조(홍보 및 안내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성·진홍사업을 지원한 수목원·정원에 대해서는 군보,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군민, 관광객 등의 편리한 입장·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관광·레저 등 관련 안내책자, 간행물 등에 수목원·정원에 관한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- 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한 수목 원·정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 게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·검사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.
- 제9조(준용) 조성·진흥사업 등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등에 따른다.

부 칙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신엣에* 

완도군 조례 제2979호

붙임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79호

##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

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지원 조례"를 "완도군 연근해 조 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####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에서 조업(操業)하는 선단(船團)을 유치하고 그 전용부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조업선단"이란 「수산업법」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해어 업·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선단을 말한다.
- 2. "전용부두"란 조업선단의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위해 완도군 완도 읍 가용리 747-12번지에 조성한 부두를 말한다.
- 3. "부두시설물"이란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을 말한다. 제3조(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) 완도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조업선 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도무역항과 전용부두에

입항한 조업선단 및 조업선단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(이하 "조업선단지원 단체"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조업선단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생필품의 지원
- 2. 조업선단 근로자의 휴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- 3. 조업선단 지원 단체의 어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
- 4. 그 밖에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·재 정적 지원
- 제4조(지원 신청)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업선단 또는 조업선 단 지원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1. 사업계획서
  - 2.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3. 입출항신고서
  - 4. 사업대행계약서 사본(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제5조(사용 신청) 전용부두 및 전용부두에 설치된 모든 기반 시설(이하 "부두시설물"이라 한다)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선 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(변경)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의 14일 전부터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제6조(사용 승인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(변경)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 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 - 1. 조업선단이 하역 및 물품 공급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
  - 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른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.
  - ③ 군수는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(변경)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(변경) 승인 통지 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제7조(사용승인의 취소 등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신청인이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- 2. 신청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
  - 3. 신청인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4. 부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
  - 5. 그 밖에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
- 제8조(사용의 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 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업선단을 이동하게 할

수 있다.

- 1.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- 2. 부두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
- 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
- 4.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(준수사항)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
  -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- 1. 선박을 수선하는 행위
  - 2. 인화성 물품, 건설용 기자재 및 폐기물 등을 쌓아 두는 행위
  - 3. 오물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
  - 4. 장기(長期) 정박, 낚시, 야영, 물놀이 등의 행위
- 제10조(사용료)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시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
- 제11조(사용료의 면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쇄빙탑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1. 조업선단이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
  - 2. 가용어촌계에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
  - 3. 농공단지 미역 가공업체가 하역을 위해 전용부두를 사용하는 경우
  - 4.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2조(사용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  -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

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: 전액 반환

- 2. 군수가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: 전액 반환
- 3.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  - 가.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: 전액 반환 나.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: 사용료의 100분 의 50 반환
- 제13조(사용자의 손해배상 등) ①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.
  - ② 사용자는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행위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책임으 로 간주하고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.
  -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사건·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완도군 연근해 조업선 단 유치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

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조업선단 유치 지원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업선단 유치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업선단 유치 지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.

## [별표]

##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료(제10조 관련)

구 분	사용료(4시간)	비고
전용부두(척당)	100,000원	
쇄 빙 탑	50,000원	

※ 4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시간은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.

## [별지 제1호서식]

# 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지원사업 신청서

신 청 이	업 체 명					전 화	번 호				
	대	성 명				생 년	월 일				
	표자	주 소	완도	든군			(전자우편	<u>1</u> :			)
	사업장주소		완도군	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업	종				시설 규모					
	지원 신청 구분										
근해조업선단				지원	지원 시설			기 타			
총사업비 천원		자부담액		천원	원 지원금			천원			
	「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완 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					ليا د	1	월	일			
				신청인			(서명	또는	- 날인	1)	
완도	근군:	수 귀하									
1. × 2. ×	사업지	계획서 1부 가등록증 사본 강신고서 1부	1부	П							

4. 사업대행계약서 사본 1부(사업대행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(변경)					처리기간		
		신청서			즉시		
신 청 인	업 체 명						
	성 명		전화번호				
	주 소		생년월일				
사 용 료	시설종류	□전용부두 □쇄빙탑	납부기한	년	월	일	
	사용시간		사 용 료				
	산출내용						
	사용목적						
	감면사유						

「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완도군수 귀하

조업선	처리기간					
통지서			즉시			
	업 체 명		V.			
신청인	성 명		전화번호			
	주 소		생년월일			
	시설종류	□ 전용부두 □ 쇄빙탑	-			
	사용시간					
)) O =	산출내용					
사용료	사 용 료					
	사용목적					
	감면사유					
「완도군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 및 전용부두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업선단 전용부두 및 부두시설물 사용(변경) 승인 통지합니다.						
		년 월 일				
완도군수						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시엣에* 

완도군 조례 제2980호

붙임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80호

##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

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활성화에 이바지한"을 "활성화를 위하여"로, "내"를 "안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내외국"을 "내·외국"으로 한다.

제6장(제16조부터 제19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완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등

- 제16조(설립 및 기능)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,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와도군 관광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하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  -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.
  - ③ 협의회 법인으로 하며,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등을 준용한다.
  -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
- 2.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
- 3. 관광 사업자, 관광 관련 사업자,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
- 4. 선진 사례 조사 및 지역 관광정책 연구, 관광 관련 기관 단체 연대
- 5.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- 7.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- ⑤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군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구성 및 운영)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,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협의회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 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.
  -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제18조(협의회 지원) 군수는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비 등 업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협의회 허가 취소) ① 군수는 관광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
  - 2.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

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
- 3. 「관광진흥법」등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
- ② 군수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장(제20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관광진흥 업무 위탁

제20조(관광진흥 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판매
- 2. 설명회·박람회 홍보 지위
- 3. 관광 기념품·지역 특산품 개발, 홍보 및 판매
- 4.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・기념품・영상물 제작 및 배포
- 5.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6조를 제21조로 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 도 군 수 *시에* 

완도군 조례 제2981호

붙임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완도군 조례 제2981호

##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호 중 "70세"를 "65세"로 한다. 제3조 제3항 중 "70세"를 "65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313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(2023. 7. 26.)에서 의결된 **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8월 8일

완도군수 시에게

완도군 조례 제2982호

붙임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부.

#### 완도군 조례 제2982호

### 완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 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자전거도로"란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,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, 자전 거 자동차 겸용도로를 말한다.
- 2. "자전거이용시설"이라 함은 자전거도로,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 거의 이용과 관련된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 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3. "자전거주차장"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 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1.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  - 2.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  - 3.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- 5.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 제4조(군민의 참여)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노력한다.
  - 1. 자전거이용의 여건 개선과 활성화 시책에 참여 및 협조
  - 2. 자전거운전자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준수 및 자전거 안전이용
  - 3. 그 밖에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
- 제5조(활성화 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5년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 - 1.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
  - 2. 연도별 활성화 계획
  - 3.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
  - 4. 영 제4조에 관한 사항
  - 5.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
  - 6.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
  -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 -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

- 을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자전거주차장의 설치) ①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군내(외)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
  - 2. 공공기관
  - 3. 각급학교
  - 4. 공동주택
  - 5. 대형유통시설
  - 6.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하며,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한다.
  - ④ 군수는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 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제7조(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)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.
  -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 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·위탁할 수 있다.

- 제8조(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)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.
- 제9조(불법 주·정차 및 노점상, 적치물의 단속 등) ① 군수와 읍·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·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,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자전거이용의 날 지정·운영 등)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·운영할 수있다.
- 제11조(군민·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)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,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·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12조(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) ① 자전거 운전자는「도로교통법」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 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. 다만, 자전거 도로 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(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.)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

- 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(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.)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.
-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자전거 통행의 보호) 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.
- 제14조(자전거교실 운영) ① 군수는 군민·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자전거 교실을 운 영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와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안전 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.
- 제15조(교통봉사대)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·재정적인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6조(자전거의 등록·번호판 제작) 군수는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민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·부착 할 수 있으며 법 제23조 및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·면장

에게 위임한다.

- 제17조(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) ①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(도로, 자전거주차장 등)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, 보관 및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  - ②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의해 수거된 무단방치 자전거는 분해·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로 생산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의해 생산된 자전거는 저소득주민, 학교 또는 사회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.
  - ④ 보관 내용의 공고,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